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	2021. . .	
연월일	(제 회)	

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고령군수 (총무과장)
연 월 일	2021. . .

법무통계담당 심사필

#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21. . .

제출자 : 고령군수

## 1. 개정이유

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대한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○ 용어 개정(제2조 제5호 개정)

- “재위탁” 정의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위한 개정

### ○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(제5조 개정)

- 민간위탁 사무의 범위를 명확하기 위한 조문 개정

### ○ 승인·동의 및 보고 개정(제7조 개정)

-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등 의미 명확화(제7조 제3항 개정)
-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내용 명확화(제7조 제4항 개정)

### ○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개정(제8조 제1항 개정)

- 운영평가위원회의 설치, 운영 부분 개정

### ○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개정(제9조 제1항 개정)

- 고용승계 부분 및 성과관리 방안 추가

### ○ 위원회 계약심의 삭제(제10조 삭제)

- 제8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기능 중복

- 위탁계약내용 공증부분 삭제(제17조 제1호 개정)
  - 제2020년 3차 자치법규 기획정비계획에 따른 정비
- 제21조 개정으로 인한 조문 수정(제19조 개정)
  - 제21조 개정에 따른 정비
- 지도·감독내용 개정(제21조 개정)
  - 지도·점검을 지도·감독으로 개정에 따른 정비
- 감사 내용 개정(제22조 개정)
  - 감사 실시 사유의 명확화
- 이의신청 부분 삭제(제24조 개정)
  - 제2020년 3차 자치법규 기획정비계획에 따른 정비

### 3. 개정안 : 붙임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
- 나. 예산관련사항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: 2021.09.24.~2021.10.14.
- 라.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마. 규제영향 분석 결과 : 해당없음

## 조례 제 호

###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법률안

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“재위탁”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이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6조 각 호 사무”를 “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”로 한다.

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군수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재계약시에는 민간위탁 성과 및 서비스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9호(종전의 제7호)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1. 위탁사무명 및 사무내용
7. 성과관리 방안
8. 재계약의 경우 민간위탁 성과 및 서비스평가 보고서

제8조의 제목 “(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)”를 “(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설

치 및 운영)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8항 중 “**그밖**”을 “**그 밖**”으로 한다.

- 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 및 재계약에 따른 성과 및 서비스 평가를 위해 고령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 해당 안건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.

제9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“**기타**”를 “**그 밖에**”로 한다.

#### 8. 고용승계 부분 및 성과관리 방안

제10조를 삭제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**체결하여야 하며, 위탁계약내용은 공증하여야**”를 “**체결하여야**”로 한다.

제19조제3항 중 “**지도·점검**”을 “**지도·감독**”으로 한다.

제21조의 제목 “**(지도·점검)**”을 “**(지도·감독)**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-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·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, 지도·감독 시 필요한 서류,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.
-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·감독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에 경미한 과실이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

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·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발생 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24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“재위탁”이란 <u>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“재위탁”이란 <u>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이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</u></p>
<p>제5조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 군수는 <u>제6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~ 7. (생략)</p>	<p>제5조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 ----- ---- <u>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승인·동의 및 보고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<u>군수는 재계약시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 및 서비스 평가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7조(승인·동의 및 보고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군수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재계약시에는 민간위탁 성과 및</u></p>

④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위탁대상 사무명, 사무내용 및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내용

2. ~ 6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7.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제8조(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)

① 수탁기관의 계약심의,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선정, 재계약에 따른 성과 및 서비스 평가를 위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두며 해당안건 심의가 끝나면 자동해산 된 것으로 본다.

② ~ ⑦ (생략)

⑧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9조(수탁기관의 선정 기준) ①

서비스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-----  
-----  
-----.

1. 위탁사무명 및 사무내용

2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성과관리 방안

8. 재계약의 경우 민간위탁 성과 및 서비스평가 보고서

9. 그 밖에 -----  
--

제8조(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

설치 및 운영) 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 및 재계약에 따른 성과 및 서비스 평가를 위해 고령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 해당 안건 심의가 끝나면 자동해산한다.

② ~ ⑦ (현행과 같음)

⑧ 그 밖에 -----  
-----  
-----.

제9조(수탁기관의 선정 기준) ①

군수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1. ~ 7. (생략)

<신설>

8. (생략)

② 제1항제7호의 사회적가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뜻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기타 군수가 사회적가치를 높이는 행위라 확인한 사항

제10조(위원회 계약심의) ① 군수는 고령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민간위탁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, 계약심의를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계약심의를 수행한다.

1. 위탁의 목적과 범위
2. 위탁방법과 기간
3. 업체선정 입찰기준 적정성
4. 위탁비용 적정성과 지급기준
5. 고용관련 사항

-----  
-----  
-----  
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고용승계 부분 및 성과관리 방안

9. (현행 제8호와 같음)

② -----  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그 밖에 -----  
-----

제10조(위원회 계약심의) 삭제

6. 위·수탁계약서 적정성

7. 성과관리방안

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  
의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 
있다.

④ 제3항과 같이 계약심의의  
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경우 위원  
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.

제17조(위탁계약체결 등) ① 군수  
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  
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  
며, 위탁계약내용은 공증하여  
야 한다.

② ~ ⑥ (생략)

제19조(재계약) ①·② (생략)

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존  
수탁기관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 
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 
동안의 군수가 시행한 제21조의  
지도·점검에 따른 시정요구사  
항 결과, 제28조 성과 및 서비스  
평가결과, 제22조 감사 결과를  
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.

제21조(지도·점검) ① 군수는 민  
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

제17조(위탁계약체결 등) ① -----  
-----  
----- 체결하여야 한  
다.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재계약) ①·② (현행과  
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지도·감독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21조(지도·감독) ① 군수는 수  
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

탁기관을 지휘·감독하며, 필요하면 수탁기관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.

②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그 취소·정지 또는 시정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<신 설>

제22조(감사)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·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, 지도·감독 시 필요한 서류,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·감독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에 경미한 과실이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22조(감사)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·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발생 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이의신청) ① 수탁기관의  
민간위탁사무 처분에 대하여 이  
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  
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, 그  
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  
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  
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  
다.

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 
접수한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  
서에 소명서 등 관계 서류를 첨  
부하여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  
내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  
다.

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 
접수한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30  
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  
고,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  
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<삭 제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총 무 과	
연 락 처	054-950-6072